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12월 07일
(월요일)

동북일보 4면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 위한 조례안 촉구 결의안

이 용 균 의원
(새정치/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이용균 의원은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조정교부금 교부비율 최소 24% 이상으로 하여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도록 신속하게 통과 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정교부금제도는 「지방자치법」 제 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및 불균등을 완화시키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다.

최근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기초생활보



▲ 이용균 의원.

장사업,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사업, 무상급식 지원 등 사회복지 예산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자치구 부담 가중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고, 강남구 등 일부 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극히 저조하여 조정교부금 없이 기본적인 행

정수요조차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100%로 상향하도록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현재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어 있다.

서울시의 조례안대로 보통세 지원비율이 최소한 22.76% 이상 되어야 강북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를 맞출 수 있으며 아울러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이 보통세의 24% 이상 되어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부분까지 충족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인건비, 매칭사업 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조차 크게 부족하게 되어 강북구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박은주 기자 je1718@naver.com〉

북부신문 7면

강북구의회, ‘조정교부금 상향 위한 조례안’ 신속통과 촉구 결의

이용균 의원, “보통세 24%이상 돼야 도시기반시설 관리부분 충족”

강북구의회는 이용균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을 위한 조례안 신속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지난 1일 개최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조정교부금제도는 「지방자치법」 제 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및 불균등을 완화 시키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

최근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사업, 무상급식 지원 등 사회복지 예산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자치구 부담 가중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고, 강남구 등 일부 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극히 저조해 조정교부금 없이 기본적인 행정수요조차 감당할 수 없는 실정.

이에 대해 제안 설명에 나선 이용균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로 상향하도록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현재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서울시의 조례안대로 보통세 지원비율이 최소한 22.76% 이상 되어야 강북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를 맞출 수 있으며 아울러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이 보통세의 24%이상 돼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부분까지 충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인건비, 매칭사업 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조차 크게 부족하게 되어 강북구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이 의원은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조정교부금 교부비율 최소 24% 이상으로 해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이



이용균 의원이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을 위한 조례안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을 위한 조례안 신속 통과 촉구 결의안 통과



이용균 의원이 지난 1일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을 위한 조례안 신속 통과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어 통과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이용균 의원은 “조정교부금제도는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및 불균등을 완화시키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최근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사업, 무상급식 지원 등 사회복지 예산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자치구 부담 가중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자치구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극히 저조하여 조정교부금 없이는 기본적인 행정수요조차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로 상향하도록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자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현재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서울시의 조례안대로 보통세 지원비율이 최소한 22.76% 이상 되어야 강북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를 맞출 수 있으며 아울러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이 보통세의 24% 이상 되어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부분까지 충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인건비, 매칭사업 분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조차 크게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용균 의원은 자치구의 안정적 자원확보와 자치구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자치구의 자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조정교부금 교부비율 최소 24% 이상으로 하도록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